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4. 20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4.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1998.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안 제3조)
- 기금조성의 재원(안 제4조)
 -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융자의 대상(안 제7조)
 -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융자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 그 동안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운영을 하여 왔는데 자금은 특정 목적이 없이 쓸 수 있으나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하여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중소기업육성 목적에 맞게 쓰고자 합니다.
○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액과 앞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액은?	○ 현재 조성한 금액은 101억 6000만원으로 이 금액을 포함하여 총 150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되면 부대 관리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가?	○ 우리가 출연하여 시금고에서 관리해줄 때 문에 기금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도 부대비용은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융자를 받은 대상자의 융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조례가 시행된 후에 융자를 받은 대상자는 융자기간이 3년 이내이지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융자를 받은 대상자는 당초의 융자 조건대로 2년 이내가 됩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5호
의결년월일	98. 5. 2 (제60회)

제출년월일 : 1998.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안 제3조)
- 기금조성의 재원(안 제4조)
 -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융자의 대상(안 제7조)
 -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융자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안 제8조)

□ 칙 부

-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전문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조성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시장은 재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매회개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시금고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관리하되, 기금 운용수익과 운용의 원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융자대상업체 결정 통보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기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재정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공업진흥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4.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탁은 시장과 시금고와의 협약에 의하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관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
3. 용자조건 및 용자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탁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용자대상) ①시장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에 대하여 기금을 용자할 수 있다.

②제1항 용자대상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용자조건) ①용자금의 용도는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한다.
3. 용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용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분입 및 상환방법은 시장과 시금고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용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용자실시 이전에 용자총액, 용자한도액, 용자대상, 용자조건 및 용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중소기업 입증자료
3. 기타 제출서류

제11조(평가 및 선정) ①시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평가하여 업체별 지원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시급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용자대상자 우선순위는 평점항목을 정하여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순으로 한다.

제12조(추가용자)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급고와 협의하여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시급고의 협약에 정할 경우 만기일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한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금의 지원으로 인한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3장 보 칙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시급고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시급고가 필요한 때에는 용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용자금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①시급고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급고에 기금용자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급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협약·융자승인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채결·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5편 재정경제 제5장 공업진흥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부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 [1990. 6. 1
조례 제1047호]

개정 1994. 1. 8 조례 제12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금구성) ①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한다.

②제1항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관리) ①자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금융기관에 정기에금 또는 대여금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③금융기관은 조성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5조(융자대상업체) 부천시 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신제품 개발업체
2. 매출액 대 기술투자비 비율이 높은 업체
3. 공장새마을운동 우수업체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4.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장등록증 사본
4. 중소기업 인증자료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기술투자 및 신제품개발비 또는 운전자금으로 하며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제6조 규정에 의거 결정한다.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2% 내지 3% 낮게 정한다.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제3조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⑥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상환) ①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 이자를 가산한다.

③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산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시장 또는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자금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0. 6. 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8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